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39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8.

발 의 자:노웅래・윤재갑・윤준병

장철민 • 야진비 • 윤미향

김두관 · 고영인 · 신동근

전혜숙 · 김홍걸 의원

(119])

제안이유

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,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·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,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·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또한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,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,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 런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

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서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.

나. 학교환경교육의 범위 확대 등(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10조제1항) 어린이집을 학교환경교육 대상에 포함하고,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 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·보 급 및 환경체험·보전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.

다. 환경교육계획 평가 · 환류 체계 마련(안 제7조)

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과 시·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 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함.

라.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(안 제11조)

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,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마.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(안 제14조)

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 무원 및 직원 등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함. 바.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(안 제15조)

시·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,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사.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선(안 제16조제4항, 제17조 및 제18조)

환경교육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, 환경교육 사의 자격취소 요건을 명시하며,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함.

아. 환경교육도시 지정(안 제27조)

환경부장관은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,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자. 환경교육 실태조사 실시(안 제30조)

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.

법률 제 호

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

환경교육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 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환경교육"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2. "학교환경교육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· 보육시설에서 학생·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 한다.
 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
-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다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마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- 3. "사회환경교육"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책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 - ②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.
 -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
 - ·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(이하 "국 가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
 - 2. 환경교육의 현황
 - 3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 - 4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 - 5.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
 - 6.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
 - 7.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
 - 8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,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- 제6조(시·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환경교육계획(이하 "시·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국가계획 및 시·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) ① 환경 부장관, 시·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·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·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·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국가계획의 수립
- 2.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
- 3.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- 5.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
- 6.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
- 7.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호선(互選)된 민간위원이 되고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
-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·도계획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

- 공기관의 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0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·보육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학교환경 교육에 관한 사항
 - 2.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 - 3.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- 4. 환경체험·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·보육시설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에

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- 1.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
- 2.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
- 3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 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11조(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 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 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, 유효기간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교원 등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·보

- 육시설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
- 2.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
- 3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
- 제13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 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- 2. 국가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·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
 - 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 - 4.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에 대한 지원
 - 5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4조(사회환경교육의 실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환경교육 전 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5조(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.
 - ④ 시·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을 받거나,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16조(환경교육사)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,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

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습지보전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공원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
 - 나.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 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, 제305조,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 의 죄
 - 다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(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 정한다)의 죄
 - 라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8조, 제8조 의2, 제9조 및 제10조의 죄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- 3.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
- ③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

환경교육을 수행한다.
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수 있다.
- ⑤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"환경교육사" 또는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
- 제17조(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)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 - 2.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3.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
 - 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
- 제18조(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)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중교육·보육시설, 사회환경교육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

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19조(환경교육사 양성기관)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,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
- 제20조(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취소) 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양성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21조(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 다.
 -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.
-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 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에 관한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취소) 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23조(환경교육주간)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.
- 제24조(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

- 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2.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
- 3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- 4.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- 5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- 6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 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 - 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- 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 사 지원
 - 3.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 - 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 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-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"지역환경교육센터"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,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6조(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) 환경부장 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게 된 경우
 - 3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27조(환경교육도시)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, 유효기간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경비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보육시설·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9조(포상)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 교,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·단체·개인을 선 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30조(환경교육 실태조사 등)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교육· 보육시설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, 방법 및 그 밖에 필요
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31조(업무의 위탁)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•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
 - 2.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
 - 3. 국공립 교육시설
 - 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
 - 5.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협회
- 제32조(청문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
 - 2.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
 - 3.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
 - 4.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
 - 5. 제2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
- 제33조(벌칙)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제34조(과태료)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 또는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환경교육종합계획 및 지역환경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환경교육종합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환경교육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·도 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.
- 제3조(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

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1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16조의 개 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.

- 제4조(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- 제5조(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기관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경과조치) 다음 각 호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 - 1.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
- 2. 법률 제15660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12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제7조(환경교육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)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교육센터는

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